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7 선고 2022가단152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최정수, 장재원, 신민우, 신규철, 이원준, 표영택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7.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22. 6.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2. 6. 15. 접수 제41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양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소의 주식회사 D (이하 “D”라고만 합니다)와 소의 C
에 대한 양수금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의 C 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원고의 소의 주식회사 D 및 소의 C 에 대한 피보전채
권

가. 사채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합니다)’에 따
라 설립되어 사채, 대출채권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자산유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유동화전문회사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합니다) 등이 인수한 사채를
양도받고 위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거래(이
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거래”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자산유동화계
획의등록신청서 참조).

(2) E 은 이 사건 자산유동화거래의 일환으로, 2019. 6. 27. 소의 주
식회사 D (이하 “D”라고 합니다)와 사이에, 소의 D 가 발행하
는 권면금액 364,000,000원의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합
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
건 사채인수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

한 계약 참조), 같은 날 소외 D에게 이 사건 사채로 364,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소외 D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일 당시에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소외 D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각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 제16조 및 25면 서명란 참조).

사모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9년 6월 27일 체결되었다.

당사자들은 (주)D(이하 문맥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근권권설정자”라 한다)가 2019년 06월 19일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권면금액 금364,000,000원(발행가액 금 삼억육천사백만원정)의 제 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를 E 주식회사(이하 “인수회사”라 한다)가 인수한 후 A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여 “유동화회사”가 CBO(이하 “본건 CBO”라 한다)를 발행하고자 하는 거래(이하 “본건 CBO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한다.(중략)

제1조 (정의)

10. “자산양도계약”은 “본건 CBO 거래”를 위하여 “인수회사(양도인)”와 “유동화회사(양수인)” 사이에 체결된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말한다.

제2조 (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는 본건 CBO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사채의 권면총액 :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364,000,000원
5.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액면발행)
8.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5.020%로 한다.(중략)
9. 사채의 표면이자율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제4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21년 6월 27일에 일시 상환한다.(중략)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9년 9월 27일, 2019년 12월 27일, 2020년 3월 27일, 2020년 6월 27일
2020년 9월 27일, 2020년 12월 27일, 2021년 3월 27일, 2021년 6월 27일
13. 연체이자 :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당일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중략)
15. 본 사채의 납입방법 : “발행회사” 명의로 F 주식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본 사채” 발행가액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16. 본 사채의 납입기일 : 2019년 6월 27일
17. 본 사채의 발행일 : 2019년 6월 27일
18.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는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중략)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국제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

제10조 (비용부담)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2018. 10. 25. E [] 과 사이에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소외 D [] 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유동화 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서 참조)

참고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전문에 따르면, ‘인수회사인 E [] 은 발행회사인 소외 D []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를 양도하여 원고가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제2조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사채의 양도인인 E [] 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채를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채무자인 소

의 D 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50조 제1항¹ 혹은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 본문²에 따라 이 사건 사채의 양도를 주채무자인 소외 D 는 물론, 연대보증인인 소외 C 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소외 D 및 소외 C 의 사채금 상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소외 D 는 2019. 7. 12.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31호로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8호 (나)목에 따라 그 즉시 이 사건 사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서, 갑 제4호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 이에 따라 소외 D 와 연대보증인인 소외 C 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환할 사채금 채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미상환원금 364,000,000원

(나) 기간경과이자 750,936원

(i)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2호에 따르면, 소외 D 는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의 상환기일 전일까지 미상환 사채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채인수계

¹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² 자산유동화법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개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약 제4조 제9호에 따른 표면이자율, 즉 5.0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ii) 소외 D는 2019. 7.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외 D는 미상환 사채원금 364,000,000원에 대하여 발행일인 2019. 6. 27.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전일인 2019. 7. 11.까지 연 5.020%의 비율로 계산한 기간경과이자인 750,936원(= 364,000,000원 x 5.020% x 15/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연체이자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4조 제13호 (나)목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상환 사채 원금 및 그에 대한 기간경과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 2019. 7. 12.부터 현재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8%입니다(갑 제5호증 손해금률 변경 통보 참조).

(라) 채권보전비용 2,557,120원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제10조 (2)항에 따르면, 소외 D는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역시 부담하여 하고, 원고는 채권보전조치(대지급금) 비용으로 2,557,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의하여 소외 D와 연대보증인인 소외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308,056원(=미상환원금 364,000,000원 + 기간경과이자 750,936원 + 채권보전조치비용 2,557,120원) 및 이 중 364,750,936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인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하 “이 사건 사채금채권”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소외 C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1) 소의 C에 대하여 2020. 5. 21. 서울회생법원 2020회단10007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사채금채권을 신고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와 함께 393,257,113원이 시인되었습니다(갑 제6호증 회생채권신고서, 갑 제7호증의 1 회생계획안(32면~34면) 참조).

(2) 이후 소의 C은 2021. 5. 25.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을 받았습니다.

위 회생계획에 의하면, (i) 원고의 회생채권 중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95.7%에 해당하는 376,347,058원은 면제하고, (ii)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16,910,055원은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현금변제 할 금액 16,910,055원은 제1차(2021년)연도부터 제7차(2027년)연도까지 매 연도의 12. 30. 분할변제 하고, 면제대상 채권액인 376,347,058원에 대해서는 현금변제 할 금액 16,910,055원의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7. 12. 31. 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 회생계획안 33면~34면 및 17면(2. 변제기일), 갑 제7호증의 2 별첨 목록 13면, 22면 참조).

또한, 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고(갑 제7호증의 1 회생계획안 20면(11. 변제 미이행 시의 처리) 참조),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6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 회생계획안 21면(13. 기한의 이익 상실) 참조).

(3) 그런데, 소의 C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21. 12. 22. 조기종결 되었고(갑 제8호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참조), 소의 C은 제1차 연도 변제금액 6,933,122원에 대한 변제기일인 2021. 12. 30.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소외 C의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재산처분행위

소외 C은 원고를 비롯한 희생채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희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인 별지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22. 6. 14.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동기소 2022. 6. 15. 접수 제41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를 경료하여 증으로써 소외 C은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갑 제9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면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6. 14. 당시에는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의 연대보증 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희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희생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던 점에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희생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희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희생채권 중 현금변제 할 금액 16,910,055원은 제1차(2021년)연도부터 제7차(2027년)연도까지 매 연도의 12. 30.에 분할변제하기로 하였습시다만, 소외 C은 변제일이 2021. 12. 30.이었던 1차 분할대금 6,933,122원조차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기한의 이익조차 상실하였으며, 면제대상 채권액인 376,347,058원에 대해서는 현금변제 할 금액 16,910,055원의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7. 12. 31. 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갑 제7호증의 1 희생계획안 33면~34면 및 17면(2. 변제기일), 갑 제7호증의 2 별첨 목록 13면, 22면 참조), 현금변제 할 금액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희생계획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희생채권액 전부인

393,257,113원입니다(실령, 피보전채권이 현금변제 할 금액인 16,910,055원만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은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 반환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이 사건 소송이 인용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 사해행위 및 악의에 관하여

(1)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C는 이미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무를 변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않아 이미 회생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황에서, 머지 않아 회생채권자가 그 채권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던 입장에서 그 소유의 별지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필연적으로 소외 C는 위와 같은 처분 행위는 그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함과 동시에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2)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소외 C는 (i)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인 당시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ii)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하지 않아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iii) 별지 기재의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점, (iv)

이 사건 처분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와는 지인사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의 [C]의 악의는 비교적 명백합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인 소의 [C]의 악의가 명백한 이상 그 상대방인 피고의 악의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여기고, 특히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및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전 2870㎡. 끝.

